

효율적인 경찰윤리의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How to Establish Efficient Police Ethics

이상열(Lee, Sang Yeol)

ABSTRACT

The lack of a sense of police ethics causes a breach of the discipline and duties by police officers. It also brings the nation's distrust for police officers and decrease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is sense, it can be called a "public enemy."

Without strict observance of the code of ethics, the police cannot obtain trust and respect from citizens. As a result, the police will have much difficulty performing their own duties with little support and cooperation of citizens. The establishment of police ethics is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efficient police operations.

For the police ethics settlement, this study is to make the following proposals:

First, the police must make every effort to improve the ethical environment of their own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the police have to eliminate the trend of mutual distrust and produce an environment of mutual trust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effor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e ethics should be a comprehensive one.

Second, police ethics education should be practical. In stead of a top-down teaching approach, a case approach has to be introduced. According to the approach, police officers face simulated situations of ethics dilemma and decide for themselves what is right or wrong to enhance their senses of ethics.

It is desirable for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to teach police ethics systemically and practically.

Lastly, systemic factors such as fair salaries for police officers, the professional spirit of police services, and the benchmarking of good examples of police ethics should be supported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police ethics.

Upon accomplishment of all the above proposals, police officers will feel proud and stand tall as indispensable public servants.

Key words : 경찰윤리(Police ethics), 상호신뢰(Mutual trust), 경찰업무 수행 (Police operation), 윤리의식(Senses of ethics), 우수사례 벤치마킹 (Benchmarking of good examples)

I. 서 론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국내의 부패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6월 16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전국의 일반국민 2천명과 전문가 5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78.9%, 전문가의 77.6%가 우리나라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¹⁾. 또한 선진국의 청렴도 점수를 100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평균 53점)과 전문가(평균 56.8점) 모두 60점 이하인 낙제점을 쳤다(데일리줌, 2005년 6월 16일자 기사).

이러한 가운데 공권력을 바탕으로 법집행, 질서유지,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경찰조직에서 일부 경찰관들의 윤리의식 부족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부도덕한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경찰의 위상실추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윤리의식 부재는 경찰기강의 해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경찰관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공공의 적’ 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창설된 경찰은 올해로 뜻깊은 ‘창경 60주년’ 을 맞게 됐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안보와 민생치안 확립에 커다란 기여를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경찰관들에게 잔존하고 있는 경찰관의 윤리의식 부재로 인해 조직 내부에서는 사기저하를 조직외부에서는 신뢰감을 상실해 온 점이 있다.

경찰창설 이후 그동안 경찰내부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경찰윤리 제고를 위해 각종 방안들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시행해 오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경찰관 윤리의식 부재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경찰내부에서도 경찰윤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비리통제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조금씩 가시화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적격 경찰관의 진입을 막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 한계는 다분히 의외라 할 수 있다. 경찰관들의 행위는 행위 주체인 경찰관들의 (가치)의식 뿐 아니라 이들이 행동하는 조직 내 윤리적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일종의 ‘조건적’ 행위이기 때문이다(김호섭, 2004 : 88).

1) 한편 ‘부패를 막을 법제도 미비’ 를 지적한 응답자는 10% 미만에 그쳐 부패문제가 제도정비를 통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그래서 경찰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 지지와 협력을 얻지 못하면 경찰본연의 임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경찰윤리의 확립은 경찰업무수행상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다(최원석, 2004 : 102).

경찰윤리는 단순히 단편적인 부정부패의 방지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행정의 전반적인 수준과 관련되고, 경찰의 사명의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전용찬, 2000 : 17).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경찰윤리의식 실태와 윤리의식 저해요인을 파악해, 효율적인 경찰윤리를 정립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경찰윤리의 이론적 배경

1. 공직윤리의 개념

윤리(倫理)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道理)다. 그러나 윤리란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히 규정해 버릴 수 없는 개념으로서 인간행위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일련의 규범 및 규칙을 지칭한다. 즉 윤리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거를 제공하는 지침이다. 그리고 윤리의 체계는 가치의 체계이며 개인의 윤리에 대한 윤리의 판단은 현실에서 나타난 구체적 행위에 의해서 평가된다(경찰대학, 1996 : 6).

원래 윤리라는 용어는 인간행동의 선(good), 악(bad), 정(right), 사(wrong)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는 도덕적인 행동기준을 함축하고 있고 윤리적 행동이란 인간의 선하고 바른 행동을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윤리라는 용어는 조작적 개념 정의가 어렵고 애매모호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한편 윤리의 개념에 대한 관점은 절대적 윤리설과 상대적 윤리설로 구분된다. 절대적 윤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선형적 규범으로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 가치라고 한다면 상대적 윤리는 인간생활의 규범인 윤리를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생활을 통해 형성되어온 역사적인 산물로 파악한다. 즉 윤리란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서 출발되어 나온 것으로 욕구의 충돌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cooper, 1990 : chap 2).

대개 행정윤리 혹은 공직윤리라 함은 일반윤리의 특수분야에 속한다. 즉, 행정윤리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함축적인 판단이며(규범성), 외부로부터 구체화

된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적인 가치체계 속에 잠재해 있으며(내재성),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상황성) 등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또한 공직이 국민전체에 대한 공익의 실천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 직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또한 일반사회의 윤리수준으로부터 제약을 받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전수일, 2002 : 132).

공직윤리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며,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목적을 달성해야 할 의무 또는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이라 할 수 있다(경찰대학, 1996 : 13-16).

2. 경찰공무원의 윤리

경찰공무원은 일반국민이 확립해야 할 이상의 행동윤리를 요구받게 된다. 즉 정부조직의 성원으로서 정부조직이 요구하는 규범 외 대국민관계에서도 정립되어야 할 방향이 따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에 있어 최고가치는 윤리성에 있으며, 새로운 가치의 형성은 새로운 행정윤리를 만드는 것이 되며, 사명감과 기대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를 다른 의미로는 경찰공무원의 행동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안, 2001 : 472).

경찰공무원의 윤리란 경찰관이 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다. 경찰관은 치안전문가로서 국민들을 위해 권한과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공평하고 책임있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통해 봉사해야 한다.

여기에 강조되는 덕목은 봉사성, 민주성과 합리성 및 청렴성 및 적극성이 강조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조직인이 가져야 하는 윤리적 표준으로 공중의 신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역할한계와 팀워크, 공정한 접근, 객관성을 들 수 있다(전용찬, 2000 : 228).

한편 경찰공무원의 윤리관은 크게 소극적 의미에서의 윤리관, 적극적 의미의 윤리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소극적 의미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윤리관

이는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규범적 명제하에서 합법적인 권력 행사를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청렴성, 합법성과 민주성, 공정성 및 가혹행위금지 등의 덕목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공권력 사용과정에서 부조리의 방지와 제거에 윤리관의 관점이 주어지게 되어 부정부패의 방지가 1차 목적이 된다.

즉, 직 · 간접적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 할 때 부패는 성립되며, 부정부패가 만연되면 정부의 업무수행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자원을 낭비하게 되어 정부를 국민이 의심하게 되는 풍조가 조상될 뿐만 아니라, 경찰업무 집행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경찰공무원은 민주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누구에게나 형평성있게 봉사하며 조직내에서도 민주적인 행정행태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2) 적극적 의미의 경찰공무원의 윤리관

이는 경찰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함을 전제로 하여 요구되는 규범으로, 소극적 의미의 윤리관이 합법성을 강조한 것에 비해 봉사성 · 합목적성과 합리성 및 책임성과 권한남용 금지가 강조된다.

경찰공무원은 재량권을 공익의 추구하고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봉사성 및 공공성과 책임성, 재량권 행사에 대한 권한남용 금지가 중요한 덕목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경찰공공의 원칙, 재량권의 쉼으로의 수축이론 등의 파생원칙이 나온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관례화된 일상업무 수행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보다 나은 민생치안 확보에 진력하는 변화의 역군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창의성을 들 수 있다. 공무원의 행동규범의 하나인 공무원의 신조와 공무원 윤리현장, 경찰현장, 경찰서비스 현장에도 창의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오늘날 복잡하고 격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는 통찰력과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무사안일주의적인 행태를 버려야 할 것이다.

3)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윤리관

경찰공무원은 직업상 전문가로서 업무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위하여 전문능력을 구비한 직업윤리관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전문 행정인의 행태와 관련된 문제로서 기본적인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대표성 확보문제

경찰공무원은 봉건시대의 근무행태로서 특정계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봉사할 책임이 있다.

(2) 정치적 중립성 · 독립성

경찰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는 국가의 지속성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 국가이념과 목표에 대한 충성

이는 정부가 근거하고 있는 정치, 행정의 이념에 헌신하며 신념을 갖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은 공무원의 신조, 공무원의 윤리헌장,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 등에 천명되고 있다.

(4) 책임성

경찰공무원이 전문행정인으로서 업무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지는 책임으로서 책임성의 요청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경찰업무의 비정형성과 다양성 및 경찰공무원의 역할증대
- ② 경찰행정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정보의 획득과 유지에 있어 독립성과 배타성
- ③ 경찰공무원의 정확한 지식의 습득과 전달의 필요성 및 공익을 위한 사용의 필요성
- ④ 공개행정의 요청

3. 경찰윤리강령

1) 기능

(1) 대외적 기능

윤리강령이 갖는 대외적 기능에는 확신의 부여 보장, 공공관계 개선, 책임의 제한 등 세 가지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확신의 부여 보장

강령²⁾들은 공중에게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이 지켜질지 기대해도 좋은

2) 미국의 학자인 쿠큰(Kookken)은 경찰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했

지를 알려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런 사항들이 공적인 문서에 기록된다는 사실에 의해서, 그리고 수준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것을 문제삼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공함에 의해서 공중에게 확신을 심어준다(중앙경찰학교, 2005 : 45-48).

② 공공관계의 개선

윤리강령이 서비스 수준과 관련해서 확신을 심어준다는 것, 보장한다는 것은 서비스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야기이다. 이를 서비스의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공공관계의 기능이다.

③ 책임의 제한

경찰윤리강령이 경찰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지켜야 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에 있어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그리고 일정한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추궁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방지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³⁾.

(2) 대내적 기능

대내적 기능으로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능, 공급자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능 등이 있다.

① 개인적 기준

한 협회의 구성원들이나 한 조직의 고용원의 입장에서 볼 때 윤리강령의 기능은 최소한의 책임 즉, 서비스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행위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조직 소속감의 고취

강령은 우선 조직의 산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강령이 가지는 기능은 조직에의 소속감을 만들고 진작시킴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다.

③ 조직의 기준

주로 조직에의 소속감을 만들고 진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령들은 이상 추구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 강령들은 의무적인 기준을 확립하기보다는 이상들을 제시한다.

다. 첫째, 공공의 지지가 경찰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중요하다. 둘째,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관계(Public Relation)가 중요하다. 셋째, 그런데 좋은 공공관계를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행동이 중요하다. 넷째, 이런 경찰관들의 행동을 규율하기 위해서는(즉 내부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이 필요하다(중앙경찰학교, 2005 : 44).

3) 윤리강령은 경찰의 행위를 평가하는 공적인 기준이며, 시민들의 근거없는 요구나 주장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④ 교육의 자료

윤리강령들이 종종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윤리교육의 핵심 내지는 틀로서 사용된다. 한국경찰의 경우에도 경찰현장의 뜻풀이가 경찰윤리 또는 경찰정신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2) 문제점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조직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의 관계속에서 제정한 정치적·윤리적 약속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조직내부적으로 경찰인이 업무수행에서 지침이 되는 규율로서 기능하는 것도 오히려 이러한 약속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전용찬, 2000 : 251).

한편 경찰윤리강령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강령이라는 형식 그 자체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들은 강령들의 실제 제정과 사용에 관련된 우연적인 것들이다. 전자를 본질적인 문제점, 후자를 우연적인 문제점으로 칭하기도 한다. 본질적인 문제점들은 현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따라 붙는 문제들로서 쉽게 교정되지 않는 것들이며, 우연적인 문제점들은 교정 가능한 것들이다.

(1) 우연적 문제점

① 집행가능성

직업적인 그리고 전문직업적인 강령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회생활의 각종 유혹을 뿌리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즉 그러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수요자인 공중에게 확신을 줄 필요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목적에서 생겨난 것이다⁴⁾.

② 냉소주의

일부 강령들은 그 요구에 있어 상당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반면, 다른 강령들 특히 이상추구적인 강령들은 구성원들에게 포괄적이고, 불필요하며, 부적절한 요구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의 냉소주의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⁵⁾.

③ 최소주의의 위험

한편으로는 이상 추구적인 강령들이 헌신과 봉사라는 자기 희생적인 이상들을

4) 그런데 바로 강령에 대한 필요를 야기한 상황 때문에 그 규정들은 어떤 제재(sanctions)를 포함할 때에야 준수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5) 경찰은 모든 법들을 다 집행하거나 또는 경찰로서 그들의 사적인 삶을 모든 점에서 한치의 오점도 없게 유지하도록 기대되어서는 안된다. 단지 법의 집행을 통해서 공공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들의 공적권위가 손상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사적인 삶을 영위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 따름이다.

말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강제적인 요구사항에만 초점을 맞추는 강령들은 오히려 자기희생을 단념토록 할 수 있다. 종사자들은 그들이 강령의 지시된 울타리 내에서 머무르기만 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일을 한다고 느낄 수 있다.

(2) 본질적 문제점

① 행위 중심적 성격

윤리강령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결과에 대한 중시, 행위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점에 대한 강조이다. 존재보다는 행위에다 강령들은 초점을 맞춘다.

② 비진성의 조장

도덕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이유들에 의해 근거해서 행해지는 행위를 문제 삼는다. 어떤 이유들은 행위의 도덕적 가치에 기여하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유들이 바로 자신의 이유들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③ 경직화의 위험

설령 윤리적 물음들에 대한 확정적이고 정확한 대답들을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해답들이 어떤 특정한 윤리강령 안에 요약되어 있다고 추정할 만한 단정적인 이유가 없다.

④ 우선순위의 미결정

비록 강령들이 때때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고 그래서 무경험자에게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것들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에는 그 유용성이 아주 제약되어 있다. 곤란한 경우들이 경찰업무에 적지 않게 등장한다.

4. 경찰현장

1) 대한민국의 경찰현장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탄생이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정신의 확립이 절실한 과제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이념적 지표이자 행동강령으로 삼고 미군정하의 혼란속에서 독립국가로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했다(중앙경찰학교, 2005 : 49).

그 후 1966년 7월 12일 경찰윤리규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경찰윤리헌장'을 제정·선포하였다. 이 윤리헌장에서는 자율적이고도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정신과 윤리적인 행동지표6)를 제시하고 있다.

경찰윤리현장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경찰관의 도의심을 높이고 정신자세를 정립하는 동시에 경찰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과감한 자가숙정을 하자는 것이며, 또한 경찰간 개개인의 내핍생활과 인간관계의 원활화, 지식의 함양, 직장과 가정에 있어서의 생활태도 개선 등 공사생활의 건전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1980년에는 경찰의 실천윤리강령으로 '새경찰신조'를 제정·선포했는데, '새시대의 사명완수', '깨끗하고 친절한 봉사', '공정과 소신', '스스로의 능력 계발' 등 4개항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또한 제5공화국 때에는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경찰의 자세로서 주인정신, 명예심, 도덕심, 협동정신, 사명감, 준법정신, 애국심, 반공정신, 통일 의지 등 9대 덕목을 선정해 경찰의 실천규범으로 삼기도 했다.

이후 1990년 3월 28일 대통령의 공직자 새 정신운동 추진지시에 의거해 경찰도 정직, 절제, 봉사를 통해 경찰 새 정신운동의 이념으로 삼아서 실천했다.

한편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1991년 8월 1일 '경찰헌장'을 제정·선포하였다. 경찰헌장 제정 배경은 경찰관의 공·사생활을 규율하여 시민의 사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헌장으로 표현하고, 경찰청 개청에 따르는 정신적 측면의 과업으로 다루었다.

경찰헌장의 형식은 전문 : 강령(159字), 본문 : 세항식 5項(184字) 등 총 343字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조(基調)는 국립경찰 창설 이래 어려운 치안여건을 훌륭하게 극복한 경찰의 문화전통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경찰상을 제시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해야 하는 본분을 실천덕목으로 구체화하여 경찰정신으로 표현했다.

2) 경찰헌장의 전문과 본문

(1) 경찰헌장의 전문 → 정신면

① 경찰의 전통 : 1945년 해방과 더불어 10월 21일 국립경찰로 탄생, 주권수호에 대한 자주정신, 6·25 전란시의 구국정신, 국가위기에 치안질서유지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지금까지 오직 국민의 경찰로서 나라와 겨레에 충성을 다하고 남북

6) 경찰윤리현장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각자의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다", "냉철한 이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위법과 불의에 과감하게 대결하여 항상 청렴검소한 생활로서 명리를 멀리하고 오직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여 성실하게 봉사한다", "국민의 신뢰를 명심하여 편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이 모든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격과 지식의 연마에 노력할 것이며 민주경찰의 발전에 헌신한다"는 5개항의 행동지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단의 아픔속에 공산주의와 싸움을 희생정신으로 극복해 온 자랑스런 국립경찰의 전통을 부각시켰다.

② 경찰의 본분 : 경찰의 임무와 직무수행 내지는 민주화, 자유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경찰의 역할을 명시하였는데, 이런 경찰의 임무와 사명 등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의 복무규정에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특별히 강조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라는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재확인 천명했다.

③ 경찰의 다짐

경찰의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위해서는 경찰관 개개인 모두가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각오와 자세를 굳게 맹세하고 경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길을 밝혀 스스로 가슴에 새겨 실천한다는 의지를 표현했다⁷⁾.

(2) 경찰현장의 본분 → 직무 + 생활면

① 친절한 경찰⁸⁾

인격의 존중과 진정한 봉사를 통한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준다

② 의로운 경찰

진실의 추구하고 부정에 대한 응징으로 정의로운 이미지를 구축한다

③ 공정한 경찰

국민의 신뢰 바탕과 양심에 따른 집행으로 합리적인 이미지를 구현한다.

④ 근면한 경찰

인격함양과 성실한 수행으로 진실한 이미지를 심어준다.

⑤ 깨끗한 경찰

화합과 단결, 규율과 검소로 청신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7) "경찰현장" 은 전문을 종합해 보면 경찰의 명예로운 전통을 밝히고 이런 바탕위에서 새시대 흐름에 맞는 경찰의 본분을 피력하고 경찰의 다짐과 각오를 하였으므로 특히 경찰관의 정신면을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8년 9월 30일 제정 · 공포된 "경찰서비스헌장" 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하는 경찰의 기본책무를 제시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진정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지침을 구체화하여 표현했다.

8) 친절한 경찰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7조1항,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4조에 명시되어 있다. 친절한 경찰의 모습은 경찰관 모두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알며, 국민을 반가운 손님 대하듯이 대할 때 국민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국민들 스스로가 경찰을 두려움 없이 찾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

1) 제정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 제8조 및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하여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www.police.go.kr).

2) 공정한 직무수행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 1항에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⁹⁾과 상담해야 한다.

(2) 기타 사항

제5조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을 두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제6조에 특혜의 배제,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등의 규정을 두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3)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4조 1항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지만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7가지에

9) 행동관련책임관은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경찰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서는 청문감사관이 담당하고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 규정에 의거,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¹⁰⁾.

제14조 2항에서는 직무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가액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2) 기타 사항

제10조 이권개입의 금지,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4)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제17조 1항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친족에 대한 통지,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신문·방송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제17조 2항에는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의 정관·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특별한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2) 기타 사항

제15조 1항에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서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

10)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퇴임식, 이·취임식 등 공개행사에서 제공되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고 규정했으며, 3항에서는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명시했다.

제16조는 금전의 차용금지조항 등으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이내의 친족 제외)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위반시의 조치

(1)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19조 1항에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令)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했다.

19조 3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했다.

(2)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규정에 위반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가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한 후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즉시 폐기처분하며,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한다. 또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은 15일 이내의 소속기관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¹¹⁾.

6) 교육

경찰청장(소속기관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포함)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Ⅲ. 한국경찰의 윤리의식 실태

Klockars와 동료들은 만약 경찰관들이 (1) 자신들의 비리를 규제하는 규칙을 잘 알고 있고, (2) 이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3) 비리에 대한 처벌을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4) 동료들의 비행을 보고하려는 의지가 강하면, 경찰조직의 윤리성은 제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제 경찰비리에 관한 다양한 가상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사례의 심각성과 상기요소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규모가 다른 경찰조직들이 서로 다른 윤리적 수준(분위기)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김호섭, 2004 : 91).

1. 선행연구 및 사례

김호섭(2004)의 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찰관들은 제시된 비리 사례들의(윤리적 · 법적) 심각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표1> 비리사례에 대한 응답의 평균 및 순위

| 사 례 | 심 각 성 에 대 한 인 지 | | 처 벌 수 준 에 대 한 의 지 | | 보 고 여 부 | |
|------------------------------|--------------------|-----|----------------------|-----|---------|-----|
| | 평 균 | 순 위 | 평 균 | 순 위 | 평 균 | 순 위 |
| 음주운전자 채취혈액의 알콜농도를 낮춰주고 금품수수 | 4.60 | 1 | 4.2 | 1 | 0.40 | 1 |
| 불구속될 피의자를 현혹시켜 금품수수 | 4.58 | 2 | 4.12 | 2 | 0.22 | 3 |
| 속도위반 운전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금품수수 | 4.54 | 3 | 3.80 | 4 | 0.12 | 5 |
| 도난장소에서 물품 습득하고 도난품으로 보고 | 4.51 | 4 | 3.76 | 5 | 0.24 | 2 |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반의사불벌죄 폭행사건의 피 | 4.46 | 5 | 3.91 | 3 | 0.16 | 4 |

11) 이러한 경우 제공자가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국고에 귀속한다.

12) 김호섭 교수는 지난 2004년 예비경찰관(240명)과 현직경찰관(260명) 등 500명을 대상으로 비리행위에 관한 응답자들의 윤리적 민감성을 묻는 문항들에 대한 Likert 5점 척도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경찰비리의식의 실태와 사회화 과정에 관한 실증 분석" 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 | | | | | | |
|-------------------------------------|------|----|------|----|-------|----|
| 의자로부터 금품수수 | | | | | | |
|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상사에게 금품제공 | 4.36 | 6 | 3.61 | 7 | -0.06 | 9 |
| 교통사고 차량을 특정업체에 소개하고 대가로 소개비 수수 | 4.30 | 7 | 3.58 | 8 | 0.04 | 8 |
| 불법영업 업소를 보고하는 대신 공짜 술대접 받음 | 4.30 | 8 | 3.67 | 6 | 0.06 | 7 |
| 돈지갑 습득 후, 현금 챙기고 지갑을 분실물로 신고 | 4.22 | 9 | 3.52 | 9 | 0.12 | 6 |
| 관내 상인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식사, 선물 등 제공받음 | 3.59 | 10 | 2.59 | 11 | -0.40 | 12 |
| 명절에 관내 상인들로부터 감사표시로 음식, 술대접 받음 | 3.57 | 11 | 2.75 | 10 | -0.40 | 11 |
| 근무시간외에 보안장비관련 개인사업을 함 | 3.22 | 12 | 2.20 | 14 | -0.60 | 15 |
|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집에 데려다줌 | 3.11 | 13 | 2.57 | 12 | -0.34 | 10 |
| 도주한 현행범을 검거한 후, 분풀이로 몇차례 때림 | 2.97 | 14 | 2.46 | 13 | -0.48 | 14 |
| 기밀사항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요청에 기밀보호를 위해 거짓말을 함 | 2.77 | 15 | 2.08 | 15 | -0.42 | 13 |

- * 심각성 정도 : ① 전혀 ② 약간 ③ 어느정도 ④ 꽤 ⑤ 매우
- * 처벌의 수준 : ① 어떤 처벌도 필요없음 ② 구두훈계나 견책 ③ 일정기간의 감봉(1-3개월) ④ 일정기간의 정직(1-3개월) ⑤ 해임
- * 보고여부 : ① 보고하지 않을 것(-1) ② 보고할 것(+1)

※ 자료 : 김호섭(2004), “경찰비리의식의 실태와 사회화 과정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 정책학회보, 제13권 제1호, p98. 부분인용.

1) 윤리의식 : 비리사례의 심각성

〈표1〉에서 살펴보았듯이 ‘심각성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경찰관(예비경찰관 포함)들은 금품을 대가로 음주운전자의 혈액농도를 낮춰주는 행위(4.60)¹³⁾, 불구속될 피의자를 현혹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4.58), 속도위반 운전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4.54)¹⁴⁾, 도난장소에서 물품을 습득하고 도난품으로 보고하는 행위(4.51),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반의사불벌죄 폭행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4.46),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상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4.36), 교통사고 차량을 특정업체에 소개하고 대가로 소개비를 수수하는 행위(4.30)¹⁵⁾, 불법영업 업소를 보고하는 대신 공짜 술 대접을 받는 행위(4.30)¹⁶⁾, 돈지갑 습득후, 현금 챙기고 지갑을 분실물로 신고하는 행위(4.22), 경찰

13) 지난 2003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가정주부의 혈액을 바꿔치기 한 경기도 P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검거된 경우가 이 같은 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14) 이 같은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998년 소위 ‘칼부림 사건’으로 불린 고속도로순찰대 매월 상납사건이 대표적이다. 조사결과 고속도로순찰대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로부터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 대신 금품을 수수한 뒤 내근자, 반장, 상관 등에게 매월 10-30만원씩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의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행위(3.11)¹⁷⁾ 순으로 나타났다.

2) 비리행위의 처벌 및 보고

〈표1〉에 나타났듯이 ‘처벌수준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는 운전자 채취혈액의 알콜농도를 낮춰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4.24), 불구속될 피의자를 현혹시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4.12)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고여부’에 있어서는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상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0.06)경찰관의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집에다 데려다 주는 행위(-0.34), 관내 상인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식사, 선물 등을 제공받는 행위(-0.40), 명절에 관내 상인들로부터 감사표시로 음식, 술 대접을 받는 행위(-0.40)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2. 국가청렴위원회 발표 자료 분석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2002년 1월 25일 위원회 발족 이래 2004년도 말까지 최근 3년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를 발표했다(<http://www.kicac.go.kr/>).

본 연구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비위 면직자 실태를 공직자 윤리의식 실태와 연관된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 15) 지난 2003년 7월 서울 남부지역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차량을 특정견인업체에게 소개해 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해당 경찰관들과 상급자 등이 징계 및 인사조치되었다.
 - 16) 지난 1999년 10월 30일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호프집 실소유주가 관내 경찰서와 파출소에 정기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뒤 이들의 비호아래 불법영업을 해오다가 화재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다.
 - 17) 2005년 6월 3일 대전 B경찰서 모지구대 A모경장이 음주운전 단속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K모경위를 검거했으나 상관임을 확인하고 음주측정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2005년 6월 13일자).

〈표2〉 행정분야별 발생현황 (단위 : 명)

| 발 생 분 야 | 2002년 | 2003년 | 2004년 | 합 계 |
|--------------|-----------|-----------|-----------|------------|
| 건설 · 토지 · 교통 | 61 | 70 | 89 | 220 |
| 경 찰 | 66 | 70 | 78 | 214 |
| 재정 · 경제 · 금융 | 29 | 45 | 72 | 146 |
| 교 육 | 40 | 28 | 26 | 94 |
| 세 무 | 30 | 19 | 26 | 75 |
| 복지 · 보건 · 노동 | 28 | 24 | 10 | 62 |
| 법 무 | 13 | 8 | 17 | 38 |
| 산업 · 자원 | 19 | 6 | 10 | 35 |
| 물품 · 용역 · 조달 | 1 | 1 | 30 | 32 |
| 정보 · 통신 | 11 | 13 | 4 | 28 |
| 국방 · 병무 | 16 | 8 | 2 | 26 |
| 인 사 | 1 | 1 | 21 | 23 |
| 농 립 | 6 | 9 | 6 | 21 |
| 환 경 | 5 | 5 | 5 | 15 |
| 해양 · 수산 | 9 | 4 | 2 | 15 |
| 문화 · 관광 | 4 | 3 | 2 | 9 |
| 기 타 | 10 | 6 | 5 | 21 |
| 합 계 | 351 | 320 | 405 | 1,076 |

※ 자료 : <http://www.kicac.go.kr/>

〈표2〉에서 살펴 보았듯이 비위 면직자 1,076명 가운데 건설 · 토지 · 교통 분야가 220명(2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 214명(20%), 재정 · 경제 · 금융 146명(14%), 교육 94명(9%), 세무 75명(7%), 복지 · 보건 · 노동 62명(6%), 법무 38명(4%), 산업 · 자원(4%), 물품 · 조달 · 용역 32명(3%), 정보 · 통신 28명(3%), 국방 · 병무 · 인사 23명(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자 윤리의식은 전 분야에 걸쳐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행정분야별 인력규모와 경찰인력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이 같은 수치로 경찰관의 윤리의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경찰관 윤리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표3〉 직급별 발생현황

(단위 : 명)

| 소 속 기 관 | 1 - 3급 | 4 - 5급 | 6급이하 | 합 계 |
|--------------------------|-------------|--------------|-----------|-------|
|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 국방부 제외) | 7 | 39 | 176 | 222 |
| 경 찰 청 | 치안감 · 총경 11 | 경정 · 경감 6 | 경위이하 209 | 226 |
| 국 방 부 | 장성급 2 | 영관급 5 | 위관급 이하 17 | 24 |
| 지방자치단체 | 4 | 49 | 210 | 263 |
| 교육자치단체 | 1 | 11 | 69 | 81 |
| 공직유관단체 | 부장급 63 | 차장 · 과장급 124 | 직원 73 | 260 |
| 합 계 | 88 | 234 | 754 | 1,076 |

※ 자료 : <http://www.kicac.go.kr/>

〈표3〉에 나타났듯이 직급별로는 6급이하가 754명으로 전체의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5급 (21.7%), 1-3급(8.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급별 발생현황 가운데 경찰청은 경위이하가 209명으로 전체의 9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치안감 · 총경(4.8%), 경정 · 경감(2.6%)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찰관 총원은 99,456명으로 경위이하가 98,565명(99.1%), 경정 · 경감4,419명(4.4%), 총경이상 472명(0.5%)으로 이를 직급별 발생현황과 비교해 볼 때 경위이하는 6.6%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치안감 · 총경은 4.3% 정도 높게, 경정 · 경감은 1.8% 정도 낮게 나타났음을 인식할 수 있다.

3.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1) 하소(HASO) 마소(MASO) 운동 전개

(1) 하소(HASO)운동

‘하소’ 운동은 경찰관으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긍정적인 4대 핵심요소의 이니셜을 우리말 ‘~을 합시다’ 의미인 하소(HASO)로 강조하고 있다.

- ① Harmony : 화합하소
- ② Appreciation : 감사하소
- ③ Service : 봉사하소
- ④ Obligation : 의무를 다하소

〈표4〉 하소(HASO)운동의 실천과제

| 항 목 | 세 부 실 천 과 제 |
|--------|--|
| H (화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공간 함께 쓰기 (벽허물기) . 상사 · 동료 · 부하 험담안하고 칭찬하기 . 굶은 일 먼저 하기 |
| A (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 격려 · 안부편지 · 이메일 보내기 . "좋은 글" 돌려보기 . 일과전 · 후 감사의 시간갖기 |
| S (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에게 먼저 인사하기 (명함드리기) . 민원인 일어나서 맞이하기 (의자권하기) . 어려운 사람 찾아보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
| O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과 적법절차 지키기 . 주장에 앞서 자기책임 다하기 . 교통법규, 기초질서 내가 먼저 지키기 |

※ 자료 : [http://www. police. go.kr](http://www.police.go.kr)

(2) 마소(MASO)운동

‘마소’ 운동은 경찰관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부정적인 4대 핵심요소의 이니셜을 ‘~을 하지 마시다’ 의미인 ‘마소’ 로 강조하고 있다.

- ① Moey : 금품 · 향응을 받지 마소
- ② Alcol : 과음 · 음주운전하지 마소
- ③ Sexual harassment : 성희롱 · 부도덕한 성행위 마소
- ④ Oppression : 군림하거나 권한남용 하지 마소 ·

〈표5〉 마소(MASO)운동의 실천과제

| 항 목 | 세 부 실 천 과 제 |
|---------------|---|
| M (금품 · 향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폰서 문화 없애기 . 부하에게 부담 안지우기 . 행사 찬조 안받기 |
| A (과음 · 음주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 룸싸롱 안가기 . 폭탄주 안 돌리기 . 음주운전 · 음주차량 동승 안 하기 |
| S (성희롱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등 부도덕한 성문화 근절하기 . 음담패설 · 음란사이트 접속 안 하기 . 건전한 취미생활 함께 하기 |
| O (권한남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설 · 폭력 · 총기 오남용 안 하기 . 사건청탁 안 하고, 안 받기 . 사건축소 · 통계조작 · 정보유출 안 하기 |

※ 자료 : [http://www. police. go.kr](http://www.police.go.kr)

2) 경찰기강대책 마련

경찰청은 지난 2004년 5월 10일 경찰관이 연루된 추문, 범죄 등이 잇따르자 경찰기강대책에 따른 자체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내일신문, 2004년 5월 10일자).

경찰청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은 ▲선발 · 교육 등 단계별 관리 ▲경찰관 1년 시보기간 자질검증 ▲부적격 직원 분류 ▲인성교육 강화 ▲문제성 직원 철거 관리 ▲지휘감독자 행위책임제 엄격 시행 등으로 자질이 부족한 경찰관은 과감히 도태시키는 것이다¹⁸⁾.

이와 함께 경찰청은 지난 2005년 6월 9일 감찰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시민감사위원회' 를 발족했다. '시민감사위원회' 는 경찰의 감찰 · 감사 업무의 기본방침과 계획, 주요 비위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를 심의해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2005년 5월 19일 창경 60주년을 맞아 전국 253개 경찰관서에서 일제히 '청렴경찰 실천 결의대회'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 경찰관들은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신념 ▲公私생활에서 공직자의 본분 준수 ▲청렴사회 시민문화운동 동참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005년 7월 16일 경찰이 사건을 빌미로 돈을 빌리고 얻거나 수사상 첩보입수를 이유로 조직폭력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등의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적극적인 교육에 나섰다¹⁹⁾.

울산경찰청은 이에 따라 각 경찰서에 직원들의 성실 · 청렴한 생활태도 유지 및 인권교육 강화 등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수사기능의 내실화를 꾀할 것을 지시했다(연합뉴스, 2005년 7월 16일자).

3) 경찰혼 재정립 운동

경찰청은 지난 2001년부터 '경찰혼' 을 조직의 지주로 삼아 오고 있다. '경찰혼' 이란 경찰인의 의식속에 면면히 살아 숨쉬는 맥과 정신으로, 경찰혼은 경찰인을 경찰인답게 만들도록 내면에서 용솟음치는 힘(Spiritual Power)이며, 경찰목적 달성 및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지녀야 할 무형의 준칙 · 가치판단의

18) 경찰의 이 같은 종합대책은 그동안 사실상 부적격 경찰관을 가려내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소지가 있는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경찰윤리를 재정립 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9) 경찰이 지적하고 있는 수사상 주요 취약요소는 ▲사건 관계인과의 금전거래, 사건 봐주기 후 금품 · 향응 수수 등의 부정사태 ▲개인정보 유출 행위, 알몸수색 등 인권침해 사례 ▲조폭과의 부적절한 관계유지, 특정 유치인 특혜제공 등 유착사태 등이다.

기준²⁰ 을 의미한다(경찰청, 2001 : 166).

또한 경찰혼은 과거 반성을 토대로 조직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원동력이며, 조직 자존 · 자긍 · 자생의 근원, 조직 응집력의 원천으로서 ‘조직비전 · 구성원의 가치를 하나로 묶는 용광로(Meltingpot)’이기도 하다.

〈표6〉 경찰혼의 구성요소

| 구성요소 | 내 | 용 |
|------|--|---|
| 정 의 | - 어떠한 위협앞에서도 불법 · 불의와 싸워 이기고 - 거짓과 위선없이 공명정대한 일처리로 올바름을 지향하는 정신 | |
| 봉 사 | -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깊은 사랑을 기초로 -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마음가짐 | |
| 명 예 | - 부정한 재물이나 이익을 탐냄없이 분수를 지키고 - 자기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완수하려는 의지와 근성으로 - 직업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과 천직관에서 우러나는 자긍심 · 긍지 | |

※ 자료 : 「21C 한국경찰의 비전」, 경찰청, 2001.

4. 경찰윤리 저해요인

경찰윤리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²⁰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첫째, 경찰관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를 들 수 있다. 권위주의적 공직문화속에 있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관들이 책임성과 윤리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경찰윤리는 저해될 수 밖에 없다(이상열, 2004 : 37).

둘째,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경찰관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공무원들은 관행화된 상납이나 뇌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죄의식 없이 수수하고 있는 것이 공직사회의 분위기 이다. 특히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은 부정부패가 엄정한 법집행과 국가기강 확립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전주수, 2000 : 257).

20) 경찰대학(1996)에서는 경찰윤리 저해요인을 크게 경찰공무원 가치관 및 행태적 요인, 경찰행정의 제도 및 구조적 요인, 경찰조직의 환경적 요인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2) 제도적 요인

첫째, 경찰관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경찰관은 한편으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직장인들과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열악한 직무환경에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²¹⁾.

현실적으로 볼 때 경찰관의 보수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각종 조사연구 결과 경찰관 자신들도 보수수준에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이서행, 2002 : 85).

둘째, 경찰관들의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대국민 치안서비스업무를 담당하면서 윤리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선 경찰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는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윤리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상열, 2005 : 12).

3) 환경적 요인

첫째, 경직된 관료문화를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인 문화, 무사안일주의, 비밀우선주의 등은 윤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사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인간관계 중심의 정의적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의리의식과 답례문화, 경조사문화가 윤리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 또는 시민단체와의 단절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IV. 경찰윤리 정립방안

경찰윤리 정립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윤리 저해요인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1) 의식개혁 운동

경찰관들은 부단히 자신들의 문제나 고유업무와 관련된 문제, 각종 단속 및 규

21) 이는 모든 공무원에 있어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특히, 경찰관들은 야근 및 업무강도와 특성을 고려해 타 공무원들보다 보수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 등에 있어서 의식을 개혁해 국민들 앞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법집행에 있어서 실적위주의 지나친 능률관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신축성과 고객인 국민에 대한 구체적이며 타당성을 고려한 법집행이 요청된다.

이 같은 실천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건강하고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바람직한 의식구조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집중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김택, 2004 : 105).

한편 외형적이고 전시적인 조치로서 현 사회가 경찰에 거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경찰관 개개인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투철한 의식과 사명감에 의한 윤리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2) 올바른 충성

충성은 공무원에게만 요구되는 최고가치적인 행동규범이다. 경찰공무원의 충성은 조직, 즉 국가에 대한 생산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윤리규범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충성에 의한 규제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즉 충성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경찰공무원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이상안, 2001 : 480-481).

경찰관들은 능력을 비롯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경찰로 임용되며 특히, 국민들의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을 윤리규범으로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충성은 맹목적 혹은 무조건적 충성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충성'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3) 권위주의 추방

국민들의 욕구가 날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 절차의 복잡화, 봉사심의 결여 및 무사인일주의, 법규만능주의 등은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관료제화로 경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국민들의 안녕과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며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믿을 수 있고 봉사하는 경찰이라는 인식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권위주의의 병폐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김택, 2004 : 107).

2. 제도적 요인

1) 보수수준의 현실화

보수현실화는 경찰관 본인들로서는 당연히 희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업무량과 부담에 따른 보수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공무원 보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통치권자의 정치적인 결단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데, 경찰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인상으로 최소한 공기업 수준으로의 인상이 필요하다.

2) 경찰혼 확립

경찰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요인 가운데 ‘경찰관이 지녀야 할 무형의 준칙·가치판단의 기준’인 경찰혼을 확립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경찰조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경찰혼을 발현시킨 인물을 ‘경찰영웅(Police Hero)’으로 선정하고 봉사와 희생의 경찰영웅사를 영화, 전기, 조형물로 제작·보급·전시해야 한다.

또한, 숭고한 경찰전통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시민과 경찰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경찰역사관’을 건립하여 명예의 전당, 박물관, 도서관 등 종합 역사·문화관 기능을 수행토록해 나가야 한다²²⁾(경찰청, 2001 : 167).

3) 우수사례 벤치마킹

최근 들어 기업들은 윤리경영 실천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 기업은 주로 수익창출, 주주 이익 극대화 등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그 성과를 평가하였으나 이제는 사회와 환경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기업환경 변화에 기인한다(동아일보, 2005년 9월 29일자).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005년 7월 초 “월급만으로 생활하도록 하라. 고급식당과 술집에 맞들이지 말라. 월급에 생활수준을 맞춰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직장인 윤리보감’과 ‘윤리행동 세부지침’을 임직원들에게 배포했다²³⁾(연

22)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찰역사관을 건립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런던, 셰필드, 벨파스트 등에 경찰역사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뉴욕, 시애틀 등에서 경찰역사관을 운영중이며, 뉴욕, 마이애미, 텍사스 등은 역사관 내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3) 윤리보감은 이 밖에 “부적절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부패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청탁을 해오는 상대방에 대해 무안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합뉴스, 2005년 7월 12일자).

또한 포스코건설도 지난 2005년 7월 초 윤리규범 선포 2주년을 맞아 “윤리적 사고와 의지를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규범 실천에 앞장서며, 비윤리적 행위로 회사발전을 저해했을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윤리규범과 7개 행동준칙을 발표하고 투명경영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LG화학은 1996년부터 ‘금품수수 신고제도’ 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는데, 전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이래 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 접대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받으면 3일 안에 금품수수 신고서를 작성해 윤리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대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해 경찰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조건적인 벤치마킹이 아니라 지난 2003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경찰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현재의 경찰실정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3. 환경적 요인

1) 청탁압력 배제

경찰관들은 조직 내 동료 및 상관들 뿐만 아니라 친지 및 지인들로부터 청탁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청탁압력의 결과는 가해자와 피해자 맞바꾸기 등 사건의 본질을 호도해 경찰윤리를 저해하게 된다.

2) 고객부패 유인 차단

고객들의 부패유인 문제로 각종 유흥업소의 풍속지도나 탈 · 불법시설을 단속하고 규제할 경우 업주들은 경찰관들에게 상납을 통해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소위 ‘고객과 후원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뇌물공세를 퍼붓는다. 경찰은 단속과 규제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의 부패유인을 스스로 차단해야 한다.

3) 정의적 문화 청산

한국 사회의 부패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인간관계 중심의 정의적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의리의식과 답례문화, 경조사 문화 등이 윤리의식을 저해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의적 문화를 청산해 경찰윤리를 확립시켜 나가야 한다.

4) 시민사회와의 유대강화

경찰행정 환경으로서 시민사회는 경찰행정에 중요한 투입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경찰행정의 변화는 경찰이 시민과 이들의 단체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그들과 함께 하는 치안행정을 구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이제 경찰인의 외적 윤리환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전용찬, 2000 : 91).

V. 결 론

공직자는 사회의 기둥이다. 공직자에게는 공직윤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를 지탱할 수 없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공직윤리 제고는 책임행정을 강조하고 고객지향적 행정을 주창하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이다.

올해로 '창경 60주년' 을 맞이한 경찰은 그동안 국기수호의 일인자로, 국민복의 일등공신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 같은 눈부신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관의 각종 비리로 인해 경찰의 평가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비리는 예전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최근들어서도 잇달아 일부 경찰관들의 비리가 각종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발표되고 있어 성실하게 묵묵히 주어진 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경찰의 주된 임무는 법집행, 질서유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다. 즉, 경찰은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의 수임을 받아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은 직무를 위해 주어진 권한만큼이나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한 요구는 다른 공무원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경찰조직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찰의 강압적인 법집행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찰의 윤리의식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경찰윤리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조직 자체의 윤리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 팽배하고 있는 불신문화를 추방하고 상호신뢰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즉, 경찰윤리 제고를 위한 노력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윤리교육의 내실화이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은 강사를 통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참여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의 경험담을 사례화해서 경찰관 각자가 스스로 느낌을 통해서 무엇이 옳바르고 그릇된 것인지를 판단케 하는 교육방식을 통해 윤리의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또한, 신입 경찰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서 경찰윤리를 체계적이고도 내실적으로 교육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

셋째, 보수수준의 현실화와 경찰혼 확립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제도적인 요인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 진다면 경찰관 개개인은 직장인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기둥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경찰윤리를 정립해 나가면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경찰로 거듭 태어나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대학. (1996). 「경찰윤리」. 대한문화사. 13-16.
- 경찰청. (2001). 「21C 한국경찰의 비전」. 대한문화사. 166-167.
- 김택. (2004). 공직윤리와 청백리 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9(2) : 105-107.
- 김호섭. (2004). 경찰비리 의식 실태와 사회화 과정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1) : 88
- 내일신문. 2004년 5월 10일자 기사.
- 데일리줌. 2005년 6월 16일자 기사.
- 동아일보, 2005년 9월 29일자 기사.
- 연합뉴스, 2005년 6월 13일자 기사. 2005년 7월 12일자 기사. 2005년 7월 16일자 기사.
- 이상안. (2001). 「신경찰행정학」. 대명출판사. 472-481.
- 이상열. (2004). 경찰부패의 영향요인과 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39.
- 이상열. (2005). 한국경찰공무원의 삶의 질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4(1). 16.
- 이서행. (2002). 반부패의식과 제도로서 청백리의 규범문화. 「한국부패학회보」. 7 85-87.

- 전수일. (2002). 부패억제를 위한 행정윤리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7 : 132.
- 전용찬. (2000). 「경찰윤리」. 경찰대학. 17-251.
- 전주수. (2000). 한국경찰의 반부패정책 평가와 개혁 전략.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 : 258.
- 중앙경찰학교. (2005). 「경무」. 44-53.
- 최원석. (2004). 경찰윤리학의 성격규명. 「경찰학연구」. 6 : 102.
- Cooper, Terry L (1990).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3rd ed.) . San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p. 8.
- Klockars, C. B., Ivkovich, S. K., Harver, W. E., & Haberfeld, M. R. (2000). The Measurement of Police Integrity.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asearch in Brief, 1-11. U. S. Department of Justice.
- Kooker, Don L., (1957). Ethics in Police Service. Charles C. Thomas Publisher.
- <http://www.police.go.kr/>
- <http://www.kicac.gp.kr/>

저자약력 : 이상열은 광운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중앙경찰학교와 한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행정학, 경찰이론, 경찰부패 등이다.